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출자 : 평창군수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55
----------	-----

제출연월일 : 2012. 6.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안 제4조)

-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등을 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해야 한다.

다. 군수의 책무 (안 제5조)

- 군수는 평창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라. 주민의 책무 (안 제7조)

-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등의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억제 하도록 해야 한다.

마. 발생억제 (안 제8조)

-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발생억제와 적절한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발생억제를 위한 물품 및 설비, 보조금,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안 제9조)

-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나 전용수거용기로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 고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사. 배출방법 (안 제10조)

-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장소·용기로 배출해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나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아. 수집·운반 및 재활용 (안 제13조)

-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자.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안 제14조)

-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해야 한다.

차.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안 제16조)

-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무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감량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카. 발생억제 등을 위한 조치 (안 제18조)

-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 별표 8에 따라 부과한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계부서협의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2012. 4. 9 ~ 4. 29(21일간)

마.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객석, 객실)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 중 영업장(객석, 객실)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

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차류, 제과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따로 수거하기 위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해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등을 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해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평창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6조(다량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등의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② 주민은 다량배출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억제 하도록 해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8조(발생억제)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적절한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공고하거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발생억제를 위한 물품 및 설비, 보조금,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법을 작성하여 감량의무이행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량의무이행신고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영업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고객이 식사량을 고려하여 주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형찬기와 복합찬기를 활용하

여 적절한 양의 반찬을 제공하는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개설·운영하는 자는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적 구매의 홍보 등을 통해 조리 이전 단계의 음식물류 폐기물 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감량 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나 전용수거용기로 시행한다.

②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③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 판매로 징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게를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배출 방법) ①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장소·용기로 배출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배출해서는 아니 되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나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할 것

제11조(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은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는 수거 및 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다르게 하고 업소명을 표기할 수 있다.

제12조(공동보관시설 등 설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활용을 위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재활용을 위해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된 전용운반차량과 운반함을 이용하여 악취의 발산과 오수의 유출을 막아야 하며, 전용운반차량과 운반함은 세척·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게 한 자의 시설이 관할구역 외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군수는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을 정지되는 등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

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처리에 드는 실제 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활용을 대행하게 할 것
2.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가 건조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한 후 제1호에 따라 재활용 하거나 지정된 장소·방법·용기로 배출할 것
 - 가. 단독 또는 공동 가열건조하여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할 것
 -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이행계획(변경) 신고서)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탁 10일 전까지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

우 계약서에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내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다량배출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하며,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5.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행·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6. 제4호에 따른 변경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변경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다.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2호에 따라 위탁재활용의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

제17조(발생억제 등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 의무 이행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대장
3.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8조(발생억제 등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0조, 제12조제3항,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고, 재활용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 별표 8에 따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를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와 제2조제1호 중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로 한다.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품목별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종량제 봉투 및 전용용기에 넣을 수 있는 것)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물질 (음식물종량제 봉투 및 전용용기에 넣을 수 없는 것)
공 통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것 -식품쓰레기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음식물종량제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가축이 먹을 수 없는 것 ※ 비닐, 병뚜껑, 패각류, 복어내장, 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게 포장되어 재활용 및 가축이 먹을 수 없는 물질
일 반	◦밥 등 곡류, 김치 등 반찬류, 된장·고추장 등 장류, 빵, 과자 ※ 소금성분이 많은 고추장, 된장, 간장, 김치류 등은 물로 헹구어 최대한 물기 제거 후 배출	◦비닐, 왕겨,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손가락, 플라스틱, 끈, 고무장갑, 쇠붙이, 손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마르고 딱딱한 물질
채소류	◦모든 채소류 - 통무·통배추는 깎두기 형태로 썰어서 배출 - 파·미나리, 무청, 옥수수알맹이 - 양파·생강·감자·고구마 등의 껍질	◦고추대, 고추씨, 마늘대, 옥수수대, 옥수수껍질, 생강껍질 ◦통무, 통배추, 통호박, 통수박 ◦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과일류	◦모든 과일류 - 수박·파인애플 등 부피가 큰 것은 깎두기 형태로 썰어서 배출 - 사과·배·복숭아·참외·귤 등의 껍질	◦호두·밤·도토리·코코넛·땅콩·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자두·살구·매실·감 등의 씨
육 류	◦모든 육류의 살점·지방부분	◦소·돼지·닭 등의 뼈와 털
어패류	◦생선의 대가리·뼈·내장	◦조개·꼬막·소라·전복·굴·멍게 등 패류의 껍데기, 복어내장 ◦게·가재·새우 등 갑각류의 껍데기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의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티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비고 :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물질은 일반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여야 함.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시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규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영업장면적 :		㎡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	--------------

⑧ 발생억제계획	
----------	--

⑨ 자가처리계획	⑩ 건조처리				⑮ 건조부산물처리		
	⑪ 처리방법	⑫ 처리능력	⑬ 설치신고일자	⑭ 처리량	⑯ 부산물 발생량	⑰ 처리방법	처리자
		kg/일		kg/일	kg/월		

⑱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⑲ 대행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	대행재활용량	대행계약비용	대행업소명	업종	재활용방법	대행업소 주소·전화
	kg/월	원/kg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

변경사유	
------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처리구분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대행업소명	대행업소 주소(전화)
자가감량처리	kg/일					
자가재활용	kg/월					
대행재활용	kg/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창군수 (인)

<작성요령>

-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 ⑪ 처리방법은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 ⑫ 처리능력은 감량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 ⑬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 ⑭ 부산물 처리는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 부산물의 양과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 ⑮ 자가재활용계획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⑯ 대행재활용계획은 재활용업자에게 대행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대행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붙여서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 활용			
		자가 처리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 활용 방 법	재 활용자	누 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적고,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적습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대행재활용한 경우에 적고,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적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대행 재활용하는 경우 대행업소명을 적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사업장 규 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	kg / 년
-----------------	--------

발생억제방법	
--------	--

처 리 실 적

자가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처리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재 활 용	자가재활용의 경우		대행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대행량 (kg/일)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전화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8조(발생억제)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공고하거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발생억제를 위한 물품 및 설비, 보조금,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② 전용수거용기는 수거 및 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다르게 하고 업소명을 표기할 수 있다.

제13조(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재활용을 촉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연료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해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비용추계 산출이 어려우며 향후 관련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환경과 환경과장 최찬웅
연락처	(033) 330 -2340

관계법령 발췌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7.23>

제15조(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1.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1의2.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

3.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 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0.7.23>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10.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1.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2. 제17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
 4. 삭제 <2010.7.23>
 5.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07.8.3>
 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14조제5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1.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12.24, 2011.9.7>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삭제 <2011.9.7>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것만 해당한다)
5. 가전제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가전제품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처리하는 체계를 갖춘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6. 삭제 <2011.9.7>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제38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개정 2012.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3	3	3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2호	30	70	100

다. 법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호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500	700	1,000	
다) 운반차량의 차체를 도색하지 않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마)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않은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300	500	700	
바) 폐기물을 누출 또는 흘날리게 하거나 침출수를 유출시킨 경우	300	500	700	
사)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300	500	700	
아)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않고 운반한 경우	200	300	500	
자) 그 밖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2)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300	500	700	
(3)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경우	400	600	1,000	
(4) 의료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1) 1일 이상 1개월 미만 초과 시	200	400	600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초과 시	400	600	800	
(3) 3개월 이상 초과 시	1,000	1,000	1,000	

나)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2)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3) (1) 및 (2)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4)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다)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2)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3) (1) 및 (2)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4)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00	200	300
마)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바) 그 밖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2)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300	500	700
(3)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500	700	1,000
나) 소각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400	600	800
다)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한 경우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라) 그 밖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			

여 처리한 경우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4)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광역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운영자가 수탁받은 폐기물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400	600	800
라. 법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9호	500	700	1,000
마.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	100	200	300
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3호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	30	50
3)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70	100
사.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4호	50	70	100
아.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않고 위탁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자.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2	300	600	1,000
차. 법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카.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타.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	법 제68조	100	200	300

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경우	제2항제3호			
파. 법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2	50	70	100
하. 법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6호	300	300	300
거.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너.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더.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3호			
1)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수집·운반한 경우		300	500	700
2)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나) 운반비·처분비·재활용비 또는 운반·처분 또는 재활용 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500	700	1,000
다) 운반비 및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한 경우(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분업자 또는 재활용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 외에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0	700	1,000
라) 나)의 내용 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300	500	700
마)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한 내에 사후정산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4)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말한		500	700	1,000

다)				
5) 수집·운반능력,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을 위탁받은 경우				
가) 50퍼센트 미만 초과 시		300	500	700
나) 50퍼센트 이상 초과 시		500	700	1,000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0	500	1,000
러.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5호	100	100	100
머.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4호			
1)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바닥재가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200	500	600
라)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2) 1) 외의 중간처분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3)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700	1,000	1,000
나)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복토한 경우		400	6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500	700	1,000
4)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5) 4) 외의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6)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 항목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300	500	1,000
7)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바.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5호	300	500	1,000
서.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6호	50	70	100
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7호	100	100	100
저.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9호			
1)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68조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8조 제3항제8호	50	70	100
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2	100	200	300
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6호	300	600	1,000
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9호	50	70	100
허.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0호	50	70	100
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1호	100	100	100
노.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6호의2	1,000	1,000	1,000
도.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0호	300	300	300

로.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8호	1,000	1,000	1,000
모.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2호	100	100	100
보.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3호	100	100	100
소.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1호			
1)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은 경우		100	200	300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100	200	300
4)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100	200	300
5)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 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	200	300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	50	100
오.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0호	500	700	1,000
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4호	100	100	100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1. 생략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 가. 수집·운반의 경우

-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는 씻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3)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방역을 위하여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보관의 경우

- 1) 음식물류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 2)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스스로 감량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 스스로 재활용

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광역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설치승인(신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 3) 2)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4)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탄화, 소화 또는 부숙토 생산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용도에 맞지 아니한 헝잡물(挾雜物)과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삭제 <2011.9.29>
- 7) 삭제 <2011.9.29>
- 8)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유입된 음식물류에 포함된 고형물 중에서 무게 기준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60퍼센트 이상, 2013년 1월 1일부터는 70퍼센트 이상을 동물 등의 먹이, 퇴비 등의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사용(에너지 생산, 액비 생산 등을 위하여 다른 시설로 옮겨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8.4, 2010.10.18, 2011.9.27>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1 ~ 11. < 생 략 >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 ③ < 생 략 >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1~7. < 생 략 >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

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1. < 생 략 >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0, 2005.12.23, 2008.2.29, 2008.3.21, 2010.11.24>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鳥獸肉類)·어류·조개류·갑각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3. "중앙도매시장"이란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도매시장"이란 중앙도매시장 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5. "농수산물공판장"이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6.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이하 "민간인등"이라 한다)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7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 7 ~ 11. < 생략 >
1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란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